

제 3 부 록 (4)

1972. 10. 10.

발행인: 서울특별시청 산하 시

편집장: 서울특별시청 기획과

전화: 78-7834

발행처: 서울특별시청 출판부

시 보

차 지

- **규 칙**

제 1262 호 서울특별시공공차도인사설치에 관한 임시규칙 2

제 1263 호 서울특별시공공차도인사설치에 관한 규정 11

제 1264 호 서울특별시공공차도인사설치에 관한 규정 12

제 1265 호 서울특별시공공차도인사설치에 관한 규정 12
- **고 시**

제 141 호 서울특별시공공차도인사설치에 관한 임명규칙 18
- **훈 령**

제 362 호 서울특별시공공차도인사설치에 관한 훈령 21
- **사 령** 21

1. 시 공백을 빈으로 임명이 함다.
2. 시 공백을 공백으로 임명이 함다.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관광사업규칙에 대한 정
사 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공표한다.

서울특별시청 양 대 4

1972년 10월 18일

서울특별시규칙 제 125호

서울특별시관광사업규칙에
대한 정사 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관광사업
의 정당한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을
기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진흥법(이하
"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
의한 관광사업진흥사업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한다.

제2조 (별기정사) 시장은 관광사업
사업의 개시 승인후에 6개월 마
다 정기정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조 (임시정사) 시장은 다음 각호
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임시정사를
실시한다.

1. 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
어 사업의 종류 변경을 한후 그
사정을 개시하고자 할때.
2.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
처분을 받은후 그 사업을 개시하

고자 할때.

3. 공공의 안전을 위해할 수의가
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
제4조 (정사사항) 정제2조 및 제3
조에 의한 정사사항은 영표 제1호
의 같다.

제5조 (정사반의구성) ①정사업무를
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모임
사반(이하 "정사반"이라 한다)을
둔다.

②정사반은 반장 1인, 4인미만의
정사관과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
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술요원 약십
명을 둘 수 있다.

③반장은 관광과장이 되기 전사관을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
된다.

1. 기지분야 : 총무행정과 임의직할
과, 전기분야 : 총무과 대리제할
과, 도목, 전승분야 : 열선과 관광발전
과, 안전분야 : 기전과 안전관리제할

④감사는 관광과 관광지도제할이 된다.

⑤정사반 구성인원을 영표의 인명표
제없이 당해 직위의 보직으로서 임명
의 것으로 본다.

⑥시장은 정사반이 사모로 정사업무를
임하리 못할 때에는 당해 인명표에
충사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

별표 제1호			
경 가 보			
(1) 기 계 주 분			
구 분	종 류	단	조사 구분 이 고
하이퍼보트 (외사, 내사, 보조사)	총 길	형 태	
	보 용	단 태	
	계 초	소	
	적 경	(m/m)	
	추 위	(m/m)	
	추 개	(m 당)	
	설 치	년 월 일	
	감속부의	상대	
	중간부의	상대	
	지추부의	상대	
긴장장의	긴장추의	중량	
	긴장추의	형성	
	긴장추의	표계 유무	
	노켓표의	이전	
	노켓표의	손상	
	제이제정의	유무	
안내모음	제이제정의	이상	
	주요상의	경 남 유무	
	추수부의	유감정도	
	양양현황의	무하정도	
	모음의	단순 이상	
안 기	중간지추의	외사 (Saddle)	
	현수추의	손상마모 구별	
	제이제정의	제이제정의	

구분	종 명	요 사 부 분	비 고
제 1 차	<p>출입문의 보안장치(거울 및 무 흔류 손잡 내부 문열의 유무 거의의 파우 걸(도(물차시) 원주부와 거의의(의) 상태 받기유도출화 기능 신호장치의 기능 반차내 자동제동기 지삭 및 견착 1. 조삭 견장장 의 유무</p>		
제 2 차	<p>자동제동장치의 성능 수동제동장치의 성능 받기가 파우 할 때 견착제동 및 견수제동의 성능 분시 정전 또는 분시운전 정 지시의 음압감별 속도계 및 계속장치(경보) 공회전 및 계속장치(경보) 차량위치 표시기 및 계속 장치단락 계보장치</p>		
제 3 차	<p>항우봉출의 수량 우봉출의 전 달장치 항 우봉출의 와이어드림의 기능 회전속운봉우의 기능 수동우대기의 작동능력 전자우대기의 작동능력 제이원봉거의 능력 제이원봉거의 시운전 수봉출내동리용 능력 동력전달장치의 속우성능</p>		

발표제일료

현 장 교 정 지 시 서

대 호

수 신

1972년 11월 1일 - 11월 31일까지 실시한 학모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위 현장 교정지시하니 조처하시기 바랍니다.

연 번	교 정 사 항	교 정 안 요 일 자	비 고

1972년 11월 1일

감 사 관 장 김 경

별첨 목록

검 사 부

1. 상 호 기 아 성 명

2. 성 명 (별칭인 경우의 순서 : 대표자의 성명)

3. 주 소

4. 영업소 소재지

5. 영업종류 및 전액년월일

6. 출 자 일

7. 출자유료기간

자 . 년 월 일

지 . 년 월 일

년 월 일

국 용 부 별 시 장

광고물품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규
칙을 예의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청 대 4
1972년 10월 10일

● 서울특별시규칙 제 1233 호

광고물품단속법시행규칙개정규칙

광고물품 단속법 시행규칙을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 2 호중 " 6 " 다음에 " 7 ,
비스차내부 광고물 " 을 다음과 같
이 신설한다.

위	회	규	칙	신	지	방	법	새	제					
비스차내부 서 상부 및 후부공간	라	가로 50센티 X 세로 60센티		1. 비어있 2. 일확시 3. 1개차내 4. 승차차내 5. 1개차내	대	자	안	에	설	기.	4	-	5	제

별표 제 2 호중 " 7 " 을 " 8 " 로 하고 " 8 " 을 " 9 " 로 하고 " 9 " 를 " 10 " 으로 하고 " 10 " 을 " 11 " 로 한다.

별표 제 2 호중 " 8 " 을 " 9 " 로 , " 9 " 를 " 10 " 으로 , " 10 " 을 " 11 " 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기회조성위원회의 5개항 중 제 1항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안 제 1864 호
1972년 10월 18일

●서울특별시규칙제 1864호

서울특별시기회조성위원회의
규정 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기회조성위원회의구정 중 과
목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위원회의는 기획관리관을 위원장으로
하고, 각국장과 비상계획과, 주택과
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 경찰국장
을 차기소장 사함에 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
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안 제 1865 호
1972년 10월 18일

●서울특별시규칙제 1865호

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
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서울특별시 경찰관파출소의 명

칭 위치와 관할 구역조종 경찰의
경찰서단의 〃명목파출소〃 다음에

〃용마파출소〃를, 노랑진경찰서단의

〃관악파출소〃 다음에 〃시흥파출소〃

를, 〃남목파출소〃 다음에 〃고판

파출소〃를, 동부경찰서단의 〃성수

2가파출소〃 다음에 〃성수3가파출

소〃를, 〃중곡파출소〃 다음에

〃문차파출소〃를 각각 신설하고,

그 위치와 관할 구역및 기타 파출

소의 관할 구역을 별표와 같이

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별표 2

서울특별시정삼각리출소지역정위시및판할구역표

서명	명	원	위	시	및	판	할	구	역
신 촌 정 원 사	용우리출소	정동구신암동 250-10	신암동	186-230, 233-235, 237, 279 290-303.					
	우악리출소	정동구신암동 329-6	신암동	231, 232, 236, 241, 243, 296-301, 304, 305, 307, 309, 312 313, 320, 387-390, 393-395, 397- 399, 400-405.					
정 삼 각 리	역진리출소	정동구정동동 588	정동동	588, 591-592, 593-611, 612 -615, 617, 620-622, 624, 637. 정삼각동 172, 175-179, 180 (제 정 삼각 2동 1동, 정삼각 1동 11, 12동), 181 (제 정삼각 2동 2동, 정삼각 1동 11 12동), 188 제기동 13 (제기 1동 1동상 1-6반), 용우동 8, 9.					
	정삼각리출소	정동구정삼각리동 166	정삼각동	(제삼 2-간 8, 190-205), 간 1 (제정삼각 2동 3동, 9동 1, 180(정 삼각 1동 11, 12동), 181 (정삼각 1동, 11동 12동), 제기동 95, 96, 13(제기 1 동 1동 (제 제기 1동 1동상 1-6반), 2, 3, 10, 11, 12, 13동, 5동상 1반)					
정 삼 각 리	정동리출소	정동구정동동 643외 46	정동동	331, 335, 337-344, 347, 401, 404, 410, 420-426, 429-437, 440-471, 474, 478, 486, 490, 497, 504, 518, 519, 524, 530-532, 538, 541, 544, 547-549, 553, 558, 643 -644.					
	정동리출소	정동구정동동 538-199	정동동	25외 3, 26, 204, 206-587(정 동 4동 6-19동, 정동 1동 8동 14동,					

세	정	위	하	관	안	주	의
							제 전능동 204, 208, 209, 211 중 2, 3동).
정							전능동 1 - 203 (제 전능동 3 - 7, 27, 29-31, 33, 35, 36, 38, 41, 42, 44, 53-57, 59, 60, 64-67, 72, 74, 75, 125, 138, 183, 184, 204), 209, 211(전능 2, 3동), 604, 605 (전능 2동), 584, 589, 663, 산 8, 산 9, 산 11.
안							전능동 3 - 16, 18-24, 25 (제 3호), 27-90, 181-186, 188, 190-196, 204-206 (제 경찰파출소관할), 295 외 15-295 외 16, 295 외 9A-295 외 102, 산 3 - 산 42 (제산 8, 산 9, 산 11) 연복동 1049
관							남심리동 12 외 3 - 12 외 47, 13-19, 21-23, 25, 34, 100, 260-265, 267-270, 276, 277, 485-490, 492-495, 500-523.
하							남심리동 산 1 - 산 15, 1-102 (제 남심리 2동 12 외 3 - 12 외 47, 13-19, 21-23, 25, 34, 100), 182, 241-259, 266, 286, 294, 340, 360, 361 (남심리 2동)
주							외기동, 위경동 · 산 9, 산 10, 181-183, 187, 189, 191, 267 (제 5동), 306, 309-315, 317-321, 325, 371. 이산동 339, 341, 343-345, 346 (제 이산파출소관할), 347.
의							위경동 (제 산 9, 산 10, 181-183, 187, 189, 191, 267 (5동), 306.

서 명 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성 방 리	이천리출소 동대산구이분동 288지 97	309-315, 317-321, 325, 371) 이천제1동 71-83, 85-90, 92-101, 103, 112, 114-126, 130, 134, 138, 140-162, 257 (제2동 13-15동), 258, 260, 262-247, 270-277, 280-281, 284, 287-300, 302-304, 346 (제위 경리출소관할), 369, 163 (제3동 지 면30수를 제외한 전부), 285 (제2동 지면호수를 제외한 전부) 서라봉 333.
마 출 소	신 이 분 마 출 소 동대산구이분동 250	이천2동 255, 257 (제 이천2동 9, 10, 11, 12동) 이천3동 1-11, 13-15, 38-48, 51- 58, 60-66, 164, 165, 167-174, 176, 177, 180-184, 187, 208, 230 -232, 234, 236-238, 241-252, 254 -257. 석관동 (제 333, 제 강위마출소 관할)
출 소	인북리출소 용마리출소 동대산구면북동 977-2 동대산구면북동 553-3	면북동 (제 1049 제 용마리출소 관할) 면북동 산 1, 산 38-산 78, 112, 126, 144, 148, 205, 220, 316, 339, 340, 341, 347-349, 351-354, 357, 362, 364, 368, 370, 372-379, 381 -385, 389-403, 406, 408, 409, 412, 459, 461-476, 480, 483, 496 -500, 502-512, 523-524, 527-547, 550, 551, 553-555, 557, 559-580

제 116

제 298 호

시

보

1972.10.18.

구분	명칭	위치	범할주역
			583-585, 592-597, 600-605, 642-653, 900, 1060, 1063, 1065-1110, 1147, 1223, 1315, 1324, 1332,
농촌진흥청	농학파출소	영동포구시흥동 117	시흥동 (제 시흥파출소 관할)
	시흥파출소	영동포구시흥동 39	시흥동 80, 145-146, 130, 182-198, 200-207, 209-212, 214-230, 232-235, 237-241, 244-245, 250, 252, 253, 255, 256, 257, 259-267, 269-273, 276, 277, 279, 315, 381-389, 394-407, 409-413, 415, 416, 418, 산 72, 산 73, 산 75, 산 77, 산 80, 산 83, 산 84, 산 88, 산 89, 산 91-산 93, 산 98, 산 100-산 102, 산 109, 산 109, 산 112, 산 114-산 118.
농촌진흥청	신림파출소	영동포구신림동 82	신림동 1-93, 409-445 (구역정비번호 161, 162), 468 외 8처가, 산 159 외 3 - 산 183, 산 185, 산 187, 산 188.
	안국파출소	영동포구신림동 434	신림동 (제 신림파출소 및 고관파출소 관할구역)
농촌진흥청	고관파출소	영동포구신림동 289	신림동 94-408, 산 1 - 산 89, 산 141-산 157 외 1, 산 134 - 산 136.
	영수 2가 파출소	영동구영수동 112, 344-2	영수 2가 (제 4, 13, 14, 22-58, 60-89, 91-93, 95-116, 121-128, 130-142, 145-156, 158, 160-181, 186, 187, 190-193, 195-205, 207, 210, 235-240, 244-251, 282-334).

서명	명칭	위	비	관	할	구	역
공 부 경 합 서	경북지방청	경북지방청수동2가 49		경수2가 4, 13, 14, 22-58, 60-89, 91-93, 95-116, 121-120, 130-142, 145-156, 168, 160-181, 186, 187, 190-193, 195-205, 207, 210, 235-240, 244-251			
	신안파출소	경북주우회동 467-1		신안동, 감실동			
	화양파출소	경북주상정동 63		상정동 (제 73, 74, 76) 모전동, 화양동			
	장곡파출소	경북주장곡동 150-6		장곡동 (제 458, 503, 518) 농촌 (제 436의 1-5, 71, 430, 439, 449-451, 453-2)			
	군자파출소	경북주군자동 206		상정동 73, 74, 76 군자동 205, 206 장곡동 458, 503, 518 농촌 449-451			

고 시

서울특별시 제 141 보

서울시철거민정착단지조성(가)에 관한
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(가)에 관한

- 1. 서울시 철거민정착단지조성(가)에 관한
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(가)에 관한
주택계획(제 12호)의 제 2항규정에
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함.
- 2. 주택계획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주택계획과 및 서대문구청 시민봉사

상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이게 함.

1972. 10. 16

서울특별시장

- 1. 시설명: 서울특별시 철거민정착단
지소성을 위한 일단의
주택지조성사업(가)에 관한
주택계획
- 2. 위치: 시내 서대문구 신사동
산 93번지일원
- 3. 면적: 23,600 평 (시유지)
- 4. 시행과: 서울특별시장

가. 가 부 고 시

토	신	부	원	면	적	구	분	비	고
소	1-1	10	33	102	(15)	소	3-2	대	3-32
구	2-1	8	7	51	(110)	산	93	대	3-32
구	3-1	6	0	42		산	93	소	3-2
구	3-2	6	0	415	(215)	소	3-1	대	3-32
구	3-3	6	0	262	(10)	산	93	대	3-32
구	3-4	6	0	122		소	3-2	산	51-1
구	3-5	6	0	227	(15)	산	93	소	1-1
구	3-6	6	0	137	(16)	소	3-2	소	4-33
구	4-1	4	0	94		소	3-2	산	90 입
구	4-2	4	0	78		소	4-35		209 건
구	4-3	4	0	36		산	93	소	3-3
구	4-4	4	0	36		산	90	소	3-3
구	4-5	4	0	27		산	90	소	3-3
구	4-6	4	0	48			209	소	3-3
구	4-7	4	0	48			234	소	3-3
구	4-8	4	0	36			234	소	3-3

()는 사업구역
외 일장거리임.

보 수 명	주 제	연 장	기 정	종 정	비 고
소 4 - 9	가	38	234	소 3-3	
소 4 - 10	가	36	229-7 전	가	
소 4 - 11	가	36	산 93	소 3-4	
소 4 - 12	가	41	산 93	가	
소 4 - 13	가	70	소 3-3	가	
소 4 - 14	가	49	산 51-2 입	가	
소 4 - 15	가	67	소 3-3	가	
소 4 - 16	가	64	소 3-3	237 전	
소 4 - 17	가	54	소 3-3	소 1-1	
소 4 - 18	가	40	가	가	
소 4 - 19	가	44	가	가	
소 4 - 20	가	71	소 3-4	소 3-5	
소 4 - 21	가	63	소 1-1	가	
소 4 - 22	가	48	336 입	가	
소 4 - 23	가	69	소 3-5	소 2-1	
소 4 - 24	가	43	소 3-5	가	
소 4 - 25	가	46	소 3-5	가	
소 4 - 26	가	37	가	238 방	
소 4 - 27	가	28	가	가	
소 4 - 28	가	35	가	239+1 전	
소 4 - 29	가	45	가	소 2-1	
소 4 - 30	가	31	가	산 59	
소 4 - 31	가	70	산 58 입	소 3-6	
소 4 - 32	가	68	소 3-6	소 4-47	
소 4 - 33	가	52	소 4-14	소 4-47	
소 4 - 34	가	31	346	277	
소 4 - 35	가	74	소 3-2	산 74	

1-20

제 298 호

보

1972. 10. 18

구	번	명	특	원	년	경	기	질	종	명	비	고
구	4-36		4m		21		소	3-2	산	87		
구	4-37		.		41		산	93 입	소	3-2		
구	4-38		.		67		소	3-2	산	88-2 입		
구	4-39		.		46		소	4-19		236-4 전		
구	4-40		.		49		소	3-6	소	3-6		
구	4-41		.		62		소	4-22		236-1 대		
구	4-42		.		24		소	4-31		63-6 입		
구	4-43		.		36		소	4-31		63-6 입		
구	4-44		.		40		소	4-31		243-2		
구	4-45		.		24		소	4-34		277-2		
구	4-46		.		60		소	4-32	소	4-33		
구	4-47		.		10		대	3-32	소	4-33		

나. 양천시실묘서

구	번	명	면	적	비	율	비	고
구	4-36	공	원	433	1.9		산	93 입

양천시묘장 (묘역서)

훈 령

㉞ 서울특별시훈령 제 362 호

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공포한다.

1972년 10월 16일

서울특별시시장 양택시

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의 규정

제1조(목적) 화재예방과 진압 및 사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방대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를 둔다.

제2조(직무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화재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
2. 화재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
3. 소방력 보강에 관한 사항
4. 소방용 수리시설 확보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회지 특기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부의 위원장을 제1부시장이 겸한다.

②위원은 기획관리관, 대우국장, 소방본부장, 방소부장, 도시계획국장, 보건사회국장, 수로국장, 산업국장, 경찰국장, 농림수산청장 등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교육위원회 방위국장 및 산학협력수

석회사 영업부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직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위원장 상호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사가 된다.

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건의)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감사와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과 서기를 둔다.

②감사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방행정과 서무계장이 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사 령

㉞ 1972.10.11.

윤영택

원에 의하여 그 직을 겸함.

1972년 10월 13일

대 통 령